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18

발의연월일: 2020. 8. 5.

발 의 자:천준호·민병덕·허 영

장경태 · 문진석 · 박홍근

김종민 • 이상직 • 윤미향

이성만 • 정필모 • 서동용

임오경 · 이동주 · 황운하

문정복 • 이인영 • 김수흥

이규민 · 김두관 · 김경협

윤영덕·김경만·서영석

고민정 · 안호영 · 이용우

양정숙 • 정성호 • 서삼석

임종성 · 인재근 · 박완주

윤재갑 • 고영인 • 윤건영

송옥주 · 송영길 · 안규백

유동수 · 김승원 · 이은주

의원(4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입주민의 갑질과 열악한 근무 형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이같은 근로환경은 공동주택 근로자를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내모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되고 있음

또한 현행 「경비업법」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,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경 비업무 이외에 분리수거·외곽청소 등 기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법률 이 공동주택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

이에 부당한 업무지시를 공동주택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,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라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우에는 「경비업법」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업무의 범위를 규정토록 하는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나아가 공동주택 구성원 상호 간의 상생과 협력도모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65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이 법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「경비업법」 제7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65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5조의2(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 등) ① 경비원은 경비업무 이외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, 기타 업무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② 입주자등,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(이하 "공동주택 근로자"라 한다)에게 적정한보수를 지급하고 공동주택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노력하여야 하며,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공동주택 근로자는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.
 - ④ 공동주택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

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・	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이 법에 따라 경비업무를
	수행하는 경우에는 「경비업
	법」 제7조제5항을 적용하지
	<u>아니한다.</u>
제65조(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	제65조(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
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) ①	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) ①
~ ⑤ (생 략)	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입주자등, 입주자대표회의	<u><삭 제></u>
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	
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	
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	
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	
하며,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	
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	
하여서는 아니 된다.	
⑦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	<u><삭 제></u>
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	
를 제공하여야 한다.	
<u> </u>	제65조의2(경비원 등 공동주택
	근로자의 업무 등) ① 경비원
	은 경비업무 이외에 공동주택

관리에 필요한 기타 업무를 수 행할 수 있고, 기타 업무의 범 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- ② 입주자등,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(이하 "공동주택 근로자"라 한 다)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 고 공동주택 근로자의 처우개 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, 공동주택 근로자 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.
- ③ 공동주택 근로자는 업무 이 외에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.
- ④ 공동주택 근로자는 입주자 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 를 제공하여야 한다.